"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수신 관내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 및 자율진단 실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22.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우리 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대표자께서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자율진단하시고, **10. 22.(금)까지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 박재홍(이메일: jaehhh@korea.kr, 팩스: 0508-8230-0336)

5. 자율진단 후 추가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을 받아보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율진단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컨설팅 신청서 1부. 끝.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팀장	이재형	과장	전결 2021.10.1. 박형수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지도과-13596 (2021.10.01) 접수

우 1535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B동 601호(고잔동, 안산상공회의소) / http://ansan.moel.go.kr/

전화번호 031-412-1978 팩스번호 031-439-1903 / jaelee84@korea.kr / 비공개(7)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